

강원도립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(제정) 1999-08-03 규정 제058호
(개정) 2000-10-19 규정 제095호
(개정) 2010-05-03 규정 제246호
(개정) 2012-10-15 규정 제286호
(개정) 2015-01-16 규정 제359호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2 및 같은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.)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대학의 교직원, 학생 및 대학 외의 인사 중에 구성하되, 교학처장,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5.3.> <개정 2012.10.15> <개정 2015.01.16.> <개정 2016.4.25.>

③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.<신설 2015.01.16.>

④ 총장임용 후보의 대상이 되는 자는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, 위원은 후보등록 추천을 할 수 없다.

제3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4조(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위원회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방법 및 절차
2.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
3. 기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후보자 선정 및 추천) ① 위원회는 총장임기 만료일 40일전까지 총장 임용후보자 2인을 선정하여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은 총장임용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총장임용 후보자를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강원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제7조(후보자 선정방법) ① 위원회는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임용 후보자를 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전체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.

② 총장임용 후보자를 전체 교원의 합의에 의해 선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

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완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(1999. 8. 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 인정하
되, 이 규정 시행 후 새로이 구성하는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(2000. 10. 19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5. 3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0. 1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01. 16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